



www.seoul.go.kr
제 3197호
2013. 9. 30.(월)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목 차

◆ **자치법규**

[조례]

제5600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

자 치 법 규

[조 례]

◆ 서울특별시조례 제5600호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감 문 용 린 인
2013년 9월 30일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 (직속기관 포함)	지역 교육청	공립의 각급학교
총 계	7,299				
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3,882				
2·3급	1		1		
3급	9		9		
3·4급	3		3		
4급	37	1	25	11	
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3,825				
별정직 계	14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14				
연구직 계	12				
기록연구사	12				
기능직 계	2,931				
교육전문직원 계	459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09				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						[별표3]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					
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지역 교육 청	공립의 각급 학교	구 분	계	시의회 사무처	본청	지역 교육 청	공립의 각급 학교
총 계	7,299					총 계	7,299				
정무직 계	1					정무직 계	1				
교육감	1		1			교육감	1		1		
일반직 계	<u>3,714</u>					일반직 계	<u>3,882</u>				
2·3급	1		1			2·3급	1		1		
3급	9		9			3급	9		9		
3·4급	3		3			3·4급	3		3		
4급	37	1	25	11		4급	37	1	25	11	
4·5급	7		7			4·5급	7		7		
5급 이하 소계	<u>3,657</u>					5급 이하 소계	<u>3,825</u>				
별정직 계	14					별정직 계	14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14					5급상당 이하 소계	14				
연구직 계	12					연구직 계	12				
기록연구사	12					기록연구사	12				
기능직 계	<u>3,099</u>					기능직 계	<u>2,931</u>				
교육전문직원 계	459					교육전문직원 계	459				
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	4급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	50		28	22	
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09					5급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	409				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- 2013년도 제1회 일반직 전환시험에 합격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종류별 정원 조정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제4조 관련 별표3)
 - 일반직 계 “3,714명”을 “3,882명”으로 증원
 - 기능직 계 “3,099명”을 “2,931명”으로 감축



기관의 장	
선 람	

공 람									